

경운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재학 및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하여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리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자
3.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원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제3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계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계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및 교육)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로서의 연구윤리, 보안,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쳐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학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 시 연구참여학약서를 작성하고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학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학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에 관한 사항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불가

제9조(연구참여학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학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변동 또는 개인의 사정
3.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학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학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을 100%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

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①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 유용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19조(자체점검) 연구개발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및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주관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 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감사팀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5조(사무) 본 규정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부 칙<2021.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2021. 7. 1.부터)에 시행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